



(), 043 - 719 - 1732

1

-
1. " " ()
2. " " ()
3. " " ()
4. " "
5. " "
6. " " 가 2
7. " " , , 가,
8. " "
9. " " 가 가
10. " "
11. " "
12. " " 「 」 11 4 1 (" ")
) 가 가 가,
13. " " 「 」 11 4 1 ()
(), (),)
14. " " 가 , ,
15. " "
16. " "
17. " 가 가" 가 「 가 」 」 43
43 2 가 가 .
18. " 가"
가
19. " 가" () 가() 가()
가() 가()
20. " 가"
· · 가
-

-
21. " 가" 가
22. " 가" , ,
- , , 가
23. " " 『 , 』 8
24. " " 『 . . . 』
- , , ,
- 3 () 2 1
- 4 () 2 1 『 . . . 』
- , , , , ,
1. ,
2. 12
3. 8
4. 3
- 5.
- 6.
7. 1 6 가 『 . . . 』 7
- 2 7 『 . . . 』 27 1
- 2
- 5 ()
1. 26 가
2. 28
3. 35
4. 36
5. 40
6. 42
7. , 2
- 1 , ,

1. 23

2.

3. 37

4. 42

6

7

8 ()

(" ")

10

1

9 (가)

가

가 (" 가 ")

10

가

1. 가 가

2. 가

3. 가

4. 가

5. 가

6. 가

가

2

가

가가

가,

가

가

가

가

1. ()

2.

3.

4.

5. 가

6. 가

가

,

「

」 3 7

1

3

가

10 (가)

49

5

가

가

가

가

1. (師弟)

「 」 777

2.

3.

4.

가

가

1

가

1

11 ()

가

(" ")

1

12 ()

13 ()

1.

2.

3.

4.

5.

6.

7.

()

8.

1.

2.

3.

-
4. ,
5. ,
6.
7. ()
8.

14 () 가 2

1.
2.
3.
4.

15 () ()

() 1
(" ")

2

1.
2.
3.
4.

3

16 (.) 『 』 5
3 (" " " " ") 『 』
. 6 .
18 20

1

-
1.
2.
3. 10
4. 25 14
5.

17 () 가
」 4
1

18 () 「 12 5 1
」 , 17 2
1
가

19 () 16

18

20

4 , 20 5

가

가

20 () 가 .) 17 19
가
1 가
1 2

19

10

-
1. ,
2.
3.
4.
5. 가
6. . 가
7.

21 () 30

, 가

- . ,
1. 가
2.
3. 가 가 가

1

1. ,
2.
3.
4. . 가
5. . 가
6. 64
7.

1 11 2 2 가
(" 가 ") 7

1. 1 가 1 1
2. 가 1
3. 5 1 가

22 () 가

가

가

5

,

1. 24 1

4

2. , 가

3.

4.

1

5.

가 5

6.

3

가

,

1. 가 6

2. 6 (, ,

)

3. 1 2 가 6

가

23 () 20 (

)

가

1. 가

2. 「 가 」

3. 「 」

4. 「 」

가

가

3 가

24 () 21 1

()

가

1.

2.

3.

4. 가 ()

5. ()

6.

7. , , , (). , 가

8.

9. 47

10. (「 」)

11. 「 」 ()

12. 「 」 (IRB) ()

13. 「 가 」 ()

1 ()

25 ()

「 」 4 1 가

. , 47 (" ") (" ")

") 가 가

1 가 9 4 가

가 가 ,

가 2

가 1

「 」 3 1 가

. , 「 가 」 43

43 2 가 가

1.

2.

()

3.

()

4. 47

5.

6.

7. () 1
)

8.

,

1 3

가 , 4 7 가

8

1. 3 () 가 가

2. 3 ()

3. 3 ()

4. 3 ()

5. 3 ()

6. (.) ())

7. 가

8.

3 53

1 (" ") 가

가

5 6

4

1

가 가 (가) 가

7

가

가

8

,

3 7

」 25 1

가

「 가

,

가

26 (

)

25 8

10

24 1

, 25 9

2

("

"

)

24 1

1

27 (

)

25

「

」 3 2

1

(

2)

「

」 4 3

1.

2.

3. 가

4.

5. , , ,

6.

7. 52 1 (" ")

8. ()

9. ()

()

10.

1

1

,

(

)

3

(

"

"

)

,

2 4

(

"

"

)

1

『 가

』 49 2

『 가

』 12

, , ,

50

(

)

2

,

1 11

1

28 (

가

『

3

가

1.

2.

3. , , , ,

4. 27 4 (" ")
, . 가 가

5. . 가

6.

1 2

$$\left(\quad , \quad . \quad \right)$$

30

30

1

1 3

12

29 ()

30 () 가

1. 가

2. (25 14)

² 27 4 , 28 3

가 가

4.

5.

6.

가

가

7. 47

가

가

가

8. 54 3

가

9. 가

49

10.

가

가

11.

가

12. (

)

13.

가

1

가

1

1 4

8

,

11 13

,

49

3

가

가

가

9

1

48

31 (

)

24 1

「 가

」

— 가 () 」 , ,

「 」

2 4 ,

가

32 ()
8 , ,
40 1 15 100 70
34

35

가 (" ")
,

1.

2.

「 가 」 18 ()
" ") 가
()
5 ,
5
「 」 7 1

6
, (" ")
5
, 가

, 가 가

6 11

1 2

27 1

30

11

30

, 49 1

33 (

)

(" ")

가

26 1

(25 9

)

31 2

()

1

1

30

1.

2. 25 9

가

3.

4

20

5. 「 가 」

1 12 3 1

5

30

32 1

5

4 30
32 2

32 2 6

1. 가

2. , 가가 「 」, 「 가가 」

3.

32 2 6

31 2 3

2 , 5

34 () ()
() 3 ,
14

1.

2.

21

1

3

1

1 3

가

7

1 4

3

, 21

"

33 5 7 ("

3

1. 33 3 2

2. , 30 1 4

8 13

3. 「 가 」 12 3 1

7 () 38 1

가 가

1 3

,

7 9

7 9

6

7 9

48 6 가

3 가 가

3 51

1

3

<16>

35 ()

14 ()

,

4 가

1

가

36 ()

2 1

1. 6
2.

, 2
() 가 1

가

1.
2.
3.
4.

가

가

가

가

6

37 ()

가

()

, (), ,

()

1

가 (

가

)

가

- 2
- 1.
- 2.
- 3.
- 4.
- 5.
- 6.
- 7.
- 8.
9. 「 가 」 25 5 가
()
- 10.
11. () 2
45 38 1 가
3
- ()
1 2 () .
- , 가
, 2
1 2
가 가 39 3
1
- 38 (가)
,
- 가
1 가 25 9
가
가 , 가

39 1 2 가 가
가 47 가
가
1 2 가 가
가 . , 가 .
가
9 가
2
(. . . .
)
1
,

가

39 (가) 38 1 2 가
, 가

1. 가 10 ,

2. 가 60
38 7 가

1. 가

2.
38 1 가
49 ,

50
38 1 가 51
,

가

40 () 37 4 5
1
3

1 2 ,
1 2 , 가
3 3

1. 47 : 3

2.
: 1 6

3. 가

4. : 1 6
1 47 4
48 1
37 2
가

가 ()

2

41 () , , ,
(試作品) ()
,
,

,
,

,
,

,
가

,
가 , ,
가
「 」 11 3 1
2 가 . , 1
가

1. 가
- 2.
3. 1 2
4. (,)

(" ") 1 3
()

(無償)

1. 1
가
2. 2
「 11 4 1
가

1.
6
2.
27 12
,
3.
3
4.
가

4 가가

- 42 () , ,
가

30

가 ()

,
45

가

2

(

)

,
가

1.

2. 가

3. 가

가.

1

1

1

1

4.

가

5. 가 가

가

5

2

가

44

, 가

「

」 11

」

25

41 2

가

8

1

」 35

가

가

1.

2.

3.

11

5

3

43 ()

「 11 4 1

" " " "

" " " "

"

「

」 8 1

(" "

)

,

1. : 10

2. (「 」 2 1) :

20

3. (「 」 2 「 」 2) : 40

3

1 2

(「 」 5 3 1) ,

(" ") " "
 「 」 10 1 8 3 4
 30 ,

1. 「 」 8 3

2. 「 」 8 4 1 2
 「 」 8 4 3

1. 30 : 30

2. 1 : 20

3. 2 :

10

4. :

40

5. :

6. , , 가 가

가

2

가

3
2
3
5
3

,
<16> 3

1

<17>

<18>

<19>

44 ()

1 3
1. 5 :
2. 50 :
3. 10 :
4. 1 3 : , , ,

(') 5 3 1

)

1. 43 3 : , , ,
2. 1 : , , ,

2 1

3 1 2

2

6 30

1 2

, 1 20

7

,

1 2

1 4

6

2 6

6

1 , 2 6

5

45 ()

가

1

1.

2.

가

19 3

21 25

4

27

가 2

41 1 2

7

가

3 4

46 ()

「 」

15

1.

2.

3.

가

2

2

21

가

3

24 1

4

9

가

25

5

27

34

47 ()

「 가

」 24

()

)

가

1.

2.

3.

4.

2

가

6

,

가

1.

:

가

가

2.

: 「

」 2

가

「

」 16 3

3.

:

4

4

」

9

「 가

‘ (. . .) ’ ‘ . . . ’

「

」

가

」

가

」

가

- 48 () 가 ,
, 가 , , ,
- 1 가 ,
가
- 2 가 .
가
- 3 () 가 . 30 가
, , , , ,
가 , 4
5.
6.
7

1.
2. (. . .) .
3.
4. 25

9.
9

9 10

11

8

9

9

12

1

7

49 ()

가

」 11 2 「 가

」 27

가

9

1

가

24 1

1

1

10

가

,

가

, ,

가 가

1 5

30

1

, 가 」 「

, 1 2 , 3 」 6

, 1

8

54 1

5

1

, 가

가

11

1

가

,

가

가

1.

2.

50 ()

) 『

』 11 2 1

49

1 1

6

,

1.

2.

3.

51 ()

가 ,

가

10

,

가 ,

3

1

1

1.

가

가

2.

3. 가

1

8

52 ()

(" ")

1.

2.

3.

4.

1

3

3

53 () , ,

1.

2.

3.

54 () 「 가

1

,
가

1

2

(가)

, 가

1

55 () . 가 ()

가

1. ,

2. 가

3. 가

가 , ,

10. 가 49 . 가 1 2

56 () 가 , 가 , ,

1

1. 가

2.

3.

4.

5.

6.

7.

8.

9.

10. 가

57 () , ,

58 ()

가

59 () 「 가」
」 33 6 .

60 ()

1. 가

2.

3.

4.

5.

61 () 가 , , , , 가 ,

가 가

62 () 「 가 」, 「 가 」

」 .

63 () 「 . 」
2019 7 1 3 (3 6 30)

< 84 , 2016.1.18. >

1 ()

2 () 「 」 (79 , 2015.5.8)

3 ()

1 , 2014 11 29
49 1 (, 1 5 .) 50

1 , 2015 12 23
49 1 5

1 , 2015 7 1
49 13

4 () 3 2 4

< 145 , 2019.7.3. >

1 ()

2 ()

1 , 2018 3 1 25 5

1

1 ,

2019 1 1

36 2 3

3 () 2 2 3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4조제4항 관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별표 2]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 가. 평가위원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공무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3]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3책5공] 제도(제22조 관련)

1.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① 주관과제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
- ② 1개의 연구개발과제(주관과제)가 2개의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2개 이상의 세부과제에 참여하더라도 1개의 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
- ③ 연구자는 총 5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 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참여는 3개 과제까지 가능
- ④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시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제외

□ 참여 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수 계상 방식

	김 00	이 00	박 00
A 주관연구과제	책임자		
세부 1	책임자	연구원	연구원
세부 2	연구원	책임자	연구원
세부 3		책임자	
B 주관연구과제			
세부 1	책임자		연구원
세부 2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세부 3		책임자	
과제 참여 수	2 책	2 책	2 공

2. 3책 5공에 제외되는 과제

- ①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③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로서 하나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연구개발과제
- ④ 법령상 부여된 국가기관의 고유연구 또는 국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⑤ 기타 예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름

※ 근거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제2항,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별표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25조제7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삭제>
-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 또는 계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57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제안한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54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 또는 계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매우미흡등급(상대평가 시 최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또는 계약을 포

- 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또는 계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
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마.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등급(상대평가 시 최하위 10%를 제외한
하위 2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7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새
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
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
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사.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5]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2조 제5항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p>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p> <p>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p> <p>마.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p> <p>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p> <p>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p>	<p>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p>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 참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4조제12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출연 또는 공동연구개발과제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2) 용역연구개발과제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인건비 및 경비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34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참여연구원에게 집행한 금액(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사.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아.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1) 출연 또는 공동연구개발과제 :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2) 용역연구개발과제 :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7]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44조제6항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 가. 기슬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8]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48조제11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종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종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종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종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제9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9]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49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용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식약처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4호의2 ·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조문 (「과학기술기본법」)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제11조의2	2년

우	제1항제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조문 (<u>과학기술기본법</u>)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 · 유출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 · 유출 제11조의2 제1항제2호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5호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5호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5호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 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